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장기성장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 : ①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(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→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)
 ② 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 ④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 : 2024. 10. 17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</u> <u>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 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 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 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</u> <u>지</u>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 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 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 니다.

요약정보

-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 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</u> <u>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, 투자신탁재산의 60%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 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 률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 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,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 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 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투자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국 내 주식에 투자하여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률 달성을 추구하 는 투자신탁으로 주식의 가 격 변동, 이자율 등 기타
---	--	---	---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4. 8. 30. 기준</u> <u>2024. 9. 20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9. 20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주요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.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은행 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</u> 않으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

		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</u> 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	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습니다.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의 보호</u> 를 받지 못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. 일반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	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: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</u> <u>호되지</u> 않습니다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

		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	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	표준편차 : 15.94% 〈신 설〉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표준편차</u>	<u>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 : 33.24%</u> - 위험등급 변경 내역 : <u>2024.10.17 :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“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”에서 “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” 기준으로 변경</u> 〈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〉 1)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<u>위험등급 기준표(97.5% VaR 모형 사용)</u>
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신 설>	1) 환매방법 및 절차, 환매 신청 가능시간 <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> <table><tr><td rowspan="2">중도 환매 불가</td><td colspan="2">중도환매 허용</td></tr><tr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</td><td>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</td></tr><tr><td>-</td><td>-</td><td>○</td></tr></table>	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	-	-	○
중도 환매 불가	중도환매 허용										
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 환매시 비용 발생 하지 않음									
-	-	○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제 12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 -	<u>2024. 8. 30. 기준</u> <u>2024. 9. 20. 기준</u>								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	
1. 재무정보	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9. 20. 기준</u>								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9. 20. 기준</u>					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1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-	<u>2024. 9. 20. 기준</u>								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				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 회사연혁 추가	- <신 설>	<u>2024. 9. 30. 기준</u> <u>2022.11 종합자산운용회사로 전환</u>				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 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<u>제 25 기(2022.12.31)</u>				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4. 9. 30. 기준</u>								